축산물 가격정책은 재조정해야 한다

허 신 행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가격정책 및 축산개발연구실장
농업경제 및 응용경제학박사)

육류가격연동제 (肉類價格連動制)와 우유 행정지도 가격 (牛乳行政指導價格) 그리고 돼지나 닭의 수매제도(收買制度)는 양축농가와 소비자를 위하여 가장 바람직한 가격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어떻게 다시 조정할 것인가? 이들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행 가격정책이나 수입에 대하여 살펴 볼 필요가 있다.

◇ 가격연동제(價格連動制)와 문제점

육류에 대한 종전의 가격통제 수단이었던 행정지도가격을 완화하여 도매시장이나 가축시장에서의 지육(枝肉) 또는 생축가격(生畜價格)에 따라 정당한 유통마진을 가산하고 정육점 소매가격을 일정폭으로 연동시키는 가격제도가 바로 가격연동제이다. 행정력에 의한 소매가격 통제가 자유롭게 변동하고 있는 도매가격이나 산지시장의 생축가격에 잘 적응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취한 하나의 조치였다. 기본적인 목적은 소매가격을 산지가격이나 도매가격의 변동에 연동시켜 보자는 것이다. 그러므로서 중간상인이 취하게 될 부당마진의 폭을 줄여 나가자는데 의의가 있다.

연동가격기준설정은 농수산부에서 담당하는데 도매시장의 15일간 지육경락가격에 유통비용과 정육점 적정이윤을 가산하여 세우게된다. 기준연동가격은 각 시도(市道)의 가격심의위원회(價格審議委員會)에 보내지며, 이에따라 시도지사는 15일간의 시장가격이 지역별 연동표에 상응하는 해당지역 연동가격의 추정가격을 매 5일마다 작성토록 되어 있다. 만일 시장가격이 15일 전기(前期)에 비하여 3% 이상 변동한다면 시도지사는 가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별 연동가격을 변경토록 되어 있다.

소매가격을 도매가격변동에다가 연동시킨다는 의미에서 분명히 종전의 소매가격고정 내지 무계획적 통제보다는 발전된 가격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 제도가 최선의 것이냐 하는데는 의문의 여지가 몇 군데 있다.

첫째, 연동제의 기준가격으로 삼고 있는 도매가격이 완전경쟁적이며 공정하게 결정되고 있지 못하다는데 문제가 있다。

둘째, 수시로 바뀌는 소매가격을 소비자가 어떻게 정확히 알수 있을지가 문제이다.

셋째, 기준가격을 정하는 해당부처나 각 시도 가격심의위원회의 주기적인 업무와 이들을 집행하고 감독하는 시도지사의 노력에 대한 비용이 자못 클 수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 가격안정대운용과 수매비축

정부는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소매가격을 행정지도가격이라 묶어 놓고서 다른 한편으로는 도매단계에서 가격안정대를 설정하여 운영의 융내를 내 보기도 하였다. 79년초 쇠고기 지육도매 경락가격 상한선을 kg당2,800원에 그리고 하한선을 2,500원에 설정하였고, 돼지고기는 상한선 1,400원과 하한선 1,200원에 각각 못을 박아 두었다.

그러다가 시장가격이 변동하자 79년 4월 1일에 안정대를 조정하였는데, 쇠고기는 상한을 2,900원 하한선을 2,700원, 돼지고기는 상한선 1,500원 하한선을 1,300원으로 각각 조정하였다. 이의 유지를 위하여 정부는 79년 6월에 한우 400kg짜리 한마리당 69만원과 돼지 90kg짜리 한마리당 9만원선으로 농가판매가격이 오를때까지 축산진흥회와 축협으로 하여금 한우 1만 1천두와 돼지 4만 4천두를 수매비축하도록 지시함과 동시에 소요예산 50억원을 책정한바 있다.

그래도 돼지가격이 하락하자 산지의 돼지가격 폭락을 막기 위하여 소비촉진책으로서 돼지소매가격을 79년 6월에 600gr 근당 1,200원에서 1,100으로 인하 시켰다. 계속된 돼지가격의 하락으로 79년 9월에는 정부가 안정대의 하한선을 없애기로 결정하고 축진이 하루 850두씩 수매하던 것을 1,425두씩으로 확대 수매토록 조처하였으며, 11월부터는 비계를 제거한 돼지고기 소매가격을 600gr당 900원으로 인하시켰다. 결과적으로 축진이 수매한 돼지고기의 총량은 79년정육 3,774M/T과 지육 1,936M/T이었고, 80년 1월부터 6월 21일까지의 누계로 정육 1,061M/T과 지육 4M/T이였으며, 방출량은 79~80년 누계가 898M/T으로 밝혀졌다.

닭고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안정대가격제도를 적용한 것은 아니었지만 결국 생산자보호를 위하는 목적에서 안정대의 하한개념으로 가격폭락시 수매를 개시하였는데, 79년 52만 7천수와 80년 1월부터 6월 21일까지 25만 4천수를 축진이 사들였고, 방출량은 79~80년 누계로 463M/T이 되었다.

닭고기 수매가격은 79년 2월 23일부터 3월 9일 사이에 kg당 450원 이었는데, 3월 10일이후 500원으로 인상되었고, 79년 10월 19일부터는 다시 550원으로 재인상되기도 하였다.

가가격안정대를 설정하여 놓고 그것을 유지해 나갈 확고한 프로그램이나 재정지원이 뒤따라 주지 못한데서 생기는 여러가지 어려움을 정부로서는 감내하기가 힘들었다. 또한 안정대의 폭이 너무 협소하였기 때문에 시장가격을 그와같이 좁은 폭 속에다가 유지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여서 결국 정부는 최근에 가격안정대 운용의 포기를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 우유의 행정지도 및 지정가격

축산물가격 가운데서 가장 엄격하게 정부로부터 통제 받아 온것이 유제품(乳製品) 가격이다. 낙농가로부터 집유(集乳)되는 원유(原乳)의 판매가격은 행정지도가격에 묶여 1년에 한번 내지 두번씩 인상되어 왔으며, 78년 1월 1일에 kg당 167원하던 것이 세번이나 상향조정되어 80년 2월 2일 부터는 266원으로 껑충 뛰기도 하였다.

시유(市乳) 소비자가격은 지정가격에 묶여 72. 1~80. 4월 사이 매년평균 13. 2% 씩

인상되어 왔고, 79년 1월 1일에 180cc 1병드리 백색시유 소매가격이 70원 했었는데 80년 2월 2일부터는 70% 이상이 올라간 120원에 지정되어 소비량의 증가율을 둔화시킨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80년 2월 2일부터 180cc드리 1병의 공장도 가격은 81.5원, 도매가격이 100원이며, 소매가격은 120원으로서 공장으로부터 소매단계 까지의 마진율이 거의 30%에 달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라 보아진다.

이외의 모든 가공우유나 유제품가격이 행정지도에 묶여 공장도가격은 물론 도매 및 소매가격이 지정되어 있다. 가격산정의 과학성과 공정성 문제는 뒤로 미루더라도 이러한 가격통제가 바람직하느냐 하는데는 의문의 여지가 많다.

소비자가격이 매년 년래행사처럼 주저함이 없이 계속 인상되는것도 문제이지만 사용목적에 따른 가격차별 없이 일률적으로 원유가격을 인상시키고 있기때문에 분유나 기타 유제품가격이 선진국들의 수출가격에 비하여 너무나 높게 나타나 수입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다.

◇ 육류가격정책의 재조정방향

지금까지 간략하게 육류가격정책과 우유의 행정지도가격제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이것을 기초로하여 먼저 어떻게 하면 육류가격정책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할 수 있을까에 대하여 제안코자 한다.

육류가격은 계절변동(季節變動)과 주기변동(週期變動)을 가지고서 시간을 두고 변동하며, 하루 하루의 단기가격은 수급의 변동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 이중에서 정책적으로 가장 문제시 되고 있는것은 육류가격의 주기변동인데 주로 생산과정의 생리적작용 현상 때문에 생기고 있는 것이다. 육류가격이 계속 상승할 때는 소비자 보호가 어려워 지고, 하락할 때는 생산자 보호가 어렵다. 정책가격은 주로 생산자는 물론 소비자까지도 동시에 보호코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가격의 주기변동을 완화시키는데 정책의 촛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육류가격의 주기변동이나 계절변동 진폭을 완화시켜 적정선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생산이나 수요조절 또는 직접적인 가격의 통제 등 방법면에서 여러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다 지나온 경험에 비추어 직접적인 가격통제는 수급의 불균형을 더욱 악화시켜 자원의 효율적배분과 소득분배의 공정성을 저해해 온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생산장려나 지원정책도 적시성(適時性)의 결여로 가격주기변동을 오히려 더욱 악화시켰던 역사적 경험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그래서 수급을 고려하지 않은 직접적 가격통제나 복잡하고 위험스러운 생산조절은 피하고 비교적 손쉬운 공개시장조작에 의한 수매비축과 방출제도의 운용을 적극추진 해야 할 것이다.

농작물과는 달리 쇠고기나 돼지고기 또는 닭고기는 생산의 계절성이 매우 낮다. 그리고 냉동에 의한 장기보관과 수송 및 조작이 비교적 용이하여 수매비축에 의한 수급조절이 어렵지 않다. 이들 육류시장의 안정과 수급의 균형 또는 적정한 가격수준의 유지를 위해서는 먼저 양축농가의 생산비 보상선에다가 정부의 개입가격(介入價格) 또는 하한가격을 설정해야 하고, 소비자보호를 위해서 정부가 허용 가능한 수준에다가 목표가격(目標價格) 또는 상한선을 설정하여 시장가격의 유도를 수급의 조절로서 기해 나가야 할 것이다.

개입가격은 생산비의 계층(bulk line)을 통하여 조절코자하는 생산유지 수준과 비슷하

어떤 가격제도라 할지라도 좋은 점과 더불어 나쁜 점을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인간이란 항상 어제보다 낳은 오늘을 원하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향상되어지기를 바란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축산물 가격정책은 보다 낳은 방향을 향하여 개선되거나 재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게 떨어지는 선에다가 정해야 하며, 이 선을 시장가격이 하회(下廻)할 때는 정부가 수매를 개시하되 각축협을 통하여 할당할것이 아니라 도매시장에서 공개구매토록 해야 한다. 그래야 해당 육류시장 전체에 영향을 주게되며 출하자는 물론 생산자 모두에게 수매의 효과가 미치게 되는 것이다. 현재와 같이 축협을 통하여 출하자를 지정하고 출하두수를 할당하며 수매가격을 도매가격과는 전연 별개의 것으로 책정하여 시행하는한 시장구조의 복잡성 가격형성의 다단계화만 조장할 뿐 정부가 의도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다. 명분이야 많이 기르는 전업이나 기업농가의 가축수매를 피하고 부업적인 영세농 가축을 수매함으로서 소득분배효과를 노리자는 것이지만 수매비축제도의 근본목적이 가격의 안정화에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공개시장에서 모든 출하자에게 기회가 골고루 주어져야 할 것이다.

시장가격이 목표가격보다 높게 상승할 때는 소비자보호는 물론 과잉생산확장을 막기 위해서도 비축량의 방출을 먼저 시도하고 그래도 공급이 부족하면 수입을 허용하되 국제가격과 국내 목표가격과의 차이를 수입부과금으로 흡수하여 기금화 해두었다가 과잉생산시 수출장려금 또는 생산기반조성을 위한 장기저리융자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생산자 보호를위한 개입가격과 소비자보호를 위한 목표가격의 사이에서 시장가격이 변동하고 있는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필요가 없으며 오직 자유시장기능 그대로에 맡겨야 한다. 도매가격과 소매가격을 연동시킨다는 것은 가격정책이라고 하기보다 육류시장이 경쟁적이고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 지는 경우 자연히 그렇게 변동되어 나가야함을 뜻하고 있다. 도매시장에서 싸게 구입했으면 소매가격도 싸게해야 하고 또 비싸게 구입했으면 소비자에게 비싼만큼 올려 파는것은 너무도 당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경쟁적이고 공정한 육류시장 조성에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야 할 것이다.

◇ 우유의 차별가격제

많은 소비자들이 국내 분유가격이 국제수입가격보다 5배나 비싸다는 사실은 알아도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축산의 나라에서는 분유나 기타 유제품용 원유에 대하여 판매가격을 싸게 정하고 있으며, 같은 원유라 할지라도 시유용 우유판매가격은 비싸게 설정하여 이 둘의 평균가격을 낙농가에게 환불하고 있다. 이론적으로 시유수요는 비탄력적이고 유제품수요는 탄력적이기 때문에 분류된 두 시장의 한계수익(限界收益)과 한계비용(限界費用)을 같게 하다보면 시유용 원유가격은 비싸야하고 유제품용 원유가격은 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사용목적에 관계없이 원유가격을 균일화 시키고 있기 때문에 분유나 기타 유제품가격이 국제수입가격보다 훨씬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국제시장에서는 [illegible] 많을 때 간혹 덤

핑가격으로 팔려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국내생산비 기준 지정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다

위와같은 가격비교상의 모순을 시정하고 또 생산자는 물론 소비자보호를 위할 수 있는 경제이론의 배경에서 보더라도 우유의 차별가격제도는 우리의 낙농업계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차별가격제를 위해서는 우유협동조합이나 처리장에서 원유의 사용목적에 따라 두 시장을 엄격하게 구별하지 않으면 안된다. 분유나 유제품용 원유를 시유로 전환할 경우 엄청난 부당마진을 허용할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의 분리능력면에서 우리나라는 아직 차별가격제가 시기상조일른지 모른다. 그러나 앞으로 이 방향으로 가격제도를 유도하지 않고서는 분유나 유제품가격을 낮출 수 있는 길은 매우 희박하다.

◇ 맺는말

어떤 가격제도라 할지라도 좋은점과 더불어 나쁜점을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인간이란 항상 어제보다 낳은 오늘을 원하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향상되어 지기를 바란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축산물 가격정책은 보다 낳은 방향을 향하여 개선되거나 재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육류가격은 시장의 자율기능에 맡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생산자보호를 위한 하한 개입가격과 소비자보호를 위한 상한 목표가격을 설정하여 수매비축과 방출 및 수입으로 가격을 안정화 시키며 우유가격은 가격인상율을 완화시켜 소비를 촉진하면서 시유용 원유가격과 유제품용 원유가격을 구별하여 차별가격제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광주부화장

BABCOCK HEALTHY Chicks

바브콕

B-300V

Arbor Acres

아바에이카

사무실
전남 광주시 동구 양림동 8-15번지
전화 ⑧ 1107·2198